



동식물 위생검역 정보 뉴스

March 2021

WTO SPS 협정의 목적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부당한 무역규제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02

주요 내용

03

'21.2월 WTO SPS 통보 통계



04

'21.2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I. WTO SPS 통보 및 현황 03

II. 주요 내용 04

WTO SPS 통보문

동식물검역

[호주] 수출증명서 개정 4

동물검역

[콜롬비아] 반려동물 및 상업 목적 개·고양이의 수출입 위생조건 개정 6

식물검역

[대만] 가지속 및 고추속 식물 종자의 수입 규제조치 공표 8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령의 부속서 개정안 9

[일본] 일본 자국 내 토마토 바이러스 유입 방지에 관한 긴급조치 10

[호주] 토마토 종자 관련 병해충 위험분석 완료 11

식품안전

[브라질] 농약 6종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12

[유럽연합] 농약 10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13

[캐나다]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14

WTO TBT 통보문

동물검역

[일본] 유기농 축산물 규격 개정 15

식물검역

[중국] 대두의 국가표준(안) 공표 16

식품안전

[유럽연합] 수입 유기농 제품 인증기관의 연례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17

III. '21.2월 WTO SPS 통보 통계 18

IV. '21.2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28



Contents

SPS info NEWS 집필진

검역정책과	연구위원	강신원 (유럽 지역)	농업통상과	연구위원	이소영 (서남아·아랍권 지역)
	연구위원	염윤아 (오세아니아 지역)	동아시아FTA과	연구위원	김현정 (중국어권 지역)
	연구위원	이근필 (서반어권 지역)	수출진흥과	연구위원	황기선 (북미 지역)
	연구위원	조은송 (아시아 지역)	식품산업정책과	연구위원	유요예 (아프리카 지역)
관련질의메일	wtoagri@korea.kr				



01. WTO SPS 통보 및 현황

WTO SPS 협정은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한 회원국의 SPS 조치가 국가간 교역의 부당한 무역 규제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SPS 조치는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 원인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WTO 회원국은 자국의 SPS 조치를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SPS 조치의 공표 후 발효까지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1. 2월말 기준, WTO에 통보된 SPS 조치 총 155건을 목적 및 사유*별로 살펴보면 식품안전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위생(42건), 식물보호(28건),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의 건강보호(21건),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의 영토보호(10건) 순이었습니다.

* 하나의 WTO SPS 통보에 중복적용 가능하므로 전체 통보 건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21. 2월 말 기준, WTO SPS 통보문 중 우리나라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하였습니다.

—
WTO SPS 통보문

동식물검역

01 [호주]

수출증명서 개정

(G/SPS/N/AUS/515, '21.2.17.)

호주 농림수자원환경부는 신규 수출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수출증명서를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개정된 수출증명서는 '21.3월 중에 공표될 예정이며, 유예기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개정 사항은 양자간 합의된 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거 법령 변경(수출관리법)

- 호주 농림수자원환경부에서 발행한 모든 수출증명서에 기재된 “수출관리법1982”를 “수출관리법”으로 수정
-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 제품의 증명서에 참조된 “수출관리령”을 “수출관리법”으로 수정

2. 호주 정부 명칭(government branding) 개정

- 모든 수출증명서의 호주 정부 명칭 하단에 있는 참조 부서명은 향후 부서명 변경으로 인한 혼동 방지를 위해 “호주 정부”로 개정
- 예외 사항 : 1) 수입국이 인증서에 관할 당국의 기관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2) 식물검역인증서용

3. 서명 방식 개정

- 모든 육류, 유제품, 계란, 비처방 제품 및 해산물의 전자위생증명서에 수석수의관 서명 삭제
- 증명서 관련 OIE 및 Codex 기준에 따라 수출 시스템을 감독하는 국가수의기술매니저(National Veterinary Technical Manager, Dr Stewart Lowden) 서명으로 대체
- 예외 사항 : 1) 수기 서명이 적용되는 위생증명서
2) 살아있는 동물, 생식 관련 제품, 곡류, 종자 및 원예의 식물검역증명서
- 식물검역증명서 “승인된 관리자”에 대한 용어를 “대표단”으로 개정

관련 사이트

<https://www.agriculture.gov.au/export/certification/change-export-certificates>
<http://spsims.wto.org/en/RegularNotifications/View/170442?FromAllNotifications=True>

동물검역

01 [콜롬비아]

반려동물 및 상업 목적 개·고양이의 수출입 위생조건 개정

(G/SPS/N/COL/281/Add.2, '21.2.26.)

콜롬비아 농업연구소(ICA)는 반려동물 및 상업 목적으로 수출입되는 개·고양이의 위생조건을 개정된 결의안을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일은 '21.4.27일까지며, 수출입 위생조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 통보문에 첨부된 전문은 스페인어로 기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입 위생조건																
(공통)대상	- 상업용* 또는 반려동물용으로 수출입되는 개 및 고양이 *상업용 : 개 또는 고양이를 5마리 이상 수·출입하는 경우															
	대상	학명														
	고양이	<i>Felis catus</i>														
	개	<i>Canis familiaris</i>														
(공통)적용대상	- 반려동물용 또는 상업용으로 콜롬비아로 개, 고양이를 수출입하는 모든 개인 및 법인															
증명사항	수입위생조건	수출위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롬비아 수입 최소 10일 전, 원산지의 공식검역당국이 발급한 전자 또는 서면 위생증명서 - 해당 증명서 내 품종, 성별, 연령, 털 색깔, 전자증명서 번호(칩 포함) - 선적 전, 60일 이내에 약품명 및 처리시기를 표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동물이 선적되기 최소 5일 전, COMVEZOL(축산·동물의약품 전문이사회)에서 발급한 등록번호 및 서명이 포함된 위생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해당 증명서 내 품종, 성별, 연령, 털 색깔, 무게 - 수출을 희망하는 12개월 미만의 모든 개는 HDX 또는 FDX-B 기술(15자리 숫자의 마이크로칩)과 호환가능한 마이크로칩으로 식별되어야 함 - 의학적 진단을 거쳐야 하며, 검사 시 기생충 감염 또는 전염성 질병의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야 함 - 수출국(목적지)의 요건과 부합한 약품명 및 처리 시기를 표시해야 함 														
증명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효한 백신 접종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다음 질병에 해당하는 백신의 접종 또는 재접종 날짜, 백신약품명 및 관련 정보 등이 기재되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접종대상 질병</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6">개</td> <td>개 홍역(Distemper)</td> </tr> <tr> <td>전염성 간염(Hepatitis canina)</td> </tr> <tr> <td>렙스토피라병(Leptospirosis)</td> </tr> <tr> <td>개 파보바이러스(Parvovirus)</td> </tr> <tr> <td>코로나바이러스</td> </tr> <tr> <td>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td> </tr> <tr> <td rowspan="4">고양이</td> <td>광견병</td> </tr> <tr> <td>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Panleucopenia felina)</td> </tr> <tr> <td>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Feline viral rhi- notracheitis)</td> </tr> <tr> <td>고양이 칼리시카바이러스 (Feline calicivirus)</td> </tr> </tbody> </table>	구분	접종대상 질병	개	개 홍역(Distemper)	전염성 간염(Hepatitis canina)	렙스토피라병(Leptospirosis)	개 파보바이러스(Parvovirus)	코로나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고양이	광견병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Panleucopenia felina)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Feline viral rhi- notracheitis)	고양이 칼리시카바이러스 (Feline calicivir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되는 개·고양이는 수출국의 검역당국이 제정한 기간 내에 유효한 백신을 접종해야 함
	구분	접종대상 질병														
개	개 홍역(Distemper)															
	전염성 간염(Hepatitis canina)															
	렙스토피라병(Leptospirosis)															
	개 파보바이러스(Parvovirus)															
	코로나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고양이	광견병															
	고양이 범백혈구 감소증 (Panleucopenia felina)															
	고양이바이러스성비기관염 (Feline viral rhi- notracheitis)															
	고양이 칼리시카바이러스 (Feline calicivirus)															

반려동물(개·고양이)의 수출입 위생조건		
검사(육로, 항공, 선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결의안 내 요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업 연구소(ICA)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육안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해당 검사 이후 농업연구소(ICA)의 위생증명서(CIS)가 발급되며, 수수료 지불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결의안 내 요건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농업 연구소(ICA)는 반려동물(개·고양이)을 대상으로 서류 검토 및 육안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음 - 해당 검사 이후 농업연구소(ICA)의 위생증명서(CIS)가 발급되며, 수수료 지불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 서류검토 및 육안검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거부되며, 사용자는 위생증명서를 신규로 제출해야 함
행정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류: 반려동물을 최대 5일간 수입업자의 운반시설에 계류시키는 조치 - 입국검역: 자국에서 최소 15일간 반려동물을 격리하여 위생 상태를 관찰하는 조치 - 재선적: 자국 위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려동물의 수입이 거부되거나 추방됨 - 위생폐기: 농업연구소(ICA)가 수립한 절차에 따라 자국 보건 및 위생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전염성 질병 및 외 국질병이 발견될 경우, 동물을 폐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재: 본 결의안 내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공식통제: 농업연구소(ICA)의 공무원은 본 결의안의 효력 범위 내에서 검사, 예찰 및 통제 활동을 수행함 - 협조: 해당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법(제101조 제65항)에 따라 민간 및 군 당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의견수렴 마감일	'21.4.27일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COL/21_1559_00_s.pdf

01 [대만]

가지속 및 고추속 식물 종자의 수입 규제조치 공표

(G/SPS/N/TPKM/561, '21.2.9.)

대만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가지속 및 고추속 식물 종자의 수입 규제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내용

◎ 아래의 바이러스(총 4종) 및 바이로이드(총 6종)에 대한 생물학적 위험성을 줄이기 위하여 대만 농업위원회 동식물방역 검역국은 “가지속(*Solanum* spp.) 및 고추속(*Capsicum* spp.) 종자의 수입 규제조치를 마련함

- 바이러스 :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TYLCV),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 *Tomato mottle mosaic virus*(ToMMV), *Pepino mosaic virus*(PepMV)

- 바이로이드 : *Columnea latent viroid*(CLVd),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Tomato apical stunt viroid*(TASVd), *Tomato chlorotic dwarf viroid*(TCDVd), *Tomato planta macho viroid*(TPMVd), *Pepper chat fruit viroid*(PCFVd)

◎ 상기의 바이러스·바이로이드 관련 대만의 수입 규제조치는 아래와 같음

- “가지속(*Solanum* spp.) 및 고추속(*Capsicum* spp.) 식물 종자를 수입할 경우 수출국 식물검역당국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Tomato yellow leaf curl virus*(TYLCV), *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ToBRFV), *Tomato mottle mosaic virus*(ToMMV), *Pepino mosaic virus*(PepMV), *Columnea latent viroid*(CLVd), *Potato spindle tuber viroid*(PSTVd), *Tomato apical stunt viroid*(TASVd), *Tomato chlorotic dwarf viroid*(TCDVd), *Tomato planta macho viroid*(TPMVd), *Pepper chat fruit viroid*(PCFVd)에 대하여 수출국에서 수출 직전에 실험실 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가 미검출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 식물 종자는 소각 처리 또는 수출국으로 반송 처리될 것임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TPKM/21_1011_00_e.pdf

02 [일본]

식물방역법 시행령의 부속서 개정안 (G/SPS/N/JPN/827, '21.2.1.)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최신 과학적 근거를 반영하기 위해 식물방역법 시행령 부속서 1, 2, 3, 4, 5의 개정안을 알려왔습니다. 이 중 우리나라와 관련 있는 개정안은 부속서 3 및 부속서 4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속서 3¹⁾에 기재된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의 분포 지역/국가에 대한민국이 추가됨

검역병해충	구분	현행	개정안
과수화상병 (<i>Erwinia amylovora</i>)	분포 지역/ 국가	[중동] 이스라엘, 이란, 시리아, 터키, 요르단, 레바논 [유럽]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영국,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카자흐스탄, 북마케도니아, 키프로스, 그리스, 키르키즈공화국, 크로아티아, 코소보, 그루지아,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헝가리, 핀란드, 불가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폴란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러시아 [아프리카]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모로코 [북미] 미국(하와이 섬 제외), 캐나다 [중남미] 과테말라, 버뮤다 섬, 멕시코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아시아] 대한민국 추가
	기주식물	<i>Chaenomeles sinensis</i> (syn. <i>Pseudocydonia sinensis</i>), <i>Spiraea prunifolia</i> , <i>Mespilus germanica</i> , <i>Eriobotrya japonica</i> , <i>Cydonia oblonga</i> , <i>Rosa canina</i> , <i>Aronia</i> , <i>Photinia</i> , <i>Crataegomespilus</i> , <i>Amelanchier</i> , <i>Crataegus</i> , <i>Cotoneaster</i> , <i>Raphiolepis</i> , <i>Stranvaesia</i> , <i>Osteomeles</i> , <i>Dichotomanthes</i> , <i>Pyracantha</i> , <i>Docynia</i> , <i>Pyrus</i> , <i>Sorbus</i> , <i>Heteromeles</i> , <i>Peraphyllum</i> , <i>Chaenomeles</i> (syn. <i>Choenomeles</i>), <i>Malus</i> (부속서 24, 25 및 31에 기재된 종 제외)	좌동

*과수화상병(*Erwinia*) 외 검역병해충에 관한 분포지역/국가 및 기주식물은 관련 사이트 중 부속서 3 참고

- 부속서 4²⁾에 기재된 토마토 바이러스(*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의 분포 지역/국가가 모든 교역국으로 확대됨

검역병해충	구분	현행	개정안
토마토 바이러스 (<i>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i> , ToBRFV)	분포 지역/ 국가	[아시아] 중국(홍콩 제외) [중동]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 [유럽] 이탈리아, 네덜란드, 그리스 [중남미] 멕시코	모든 교역국으로 확대
	기주식물	토마토(<i>Lycopersicon esculentum</i> (= <i>Solanum lycopersicum</i>), <i>S. arcanum</i> , <i>S. cheesmaniae</i> , <i>S. chilense</i> , <i>S. galapagense</i> , <i>S. peruvianum</i> , <i>S. pimpinellifolium</i>), 고추(<i>Capiscum annum</i>)	좌동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절차 검토 완료 후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며, 의견제출 마감일은 '21.4.2일입니다.

관련 사이트

개정안: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0718_00_e.pdf
 부속서 1: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0718_01_e.pdf
 부속서 2: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0718_02_e.pdf
 부속서 3: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0718_03_e.pdf
 부속서 4: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0718_04_e.pdf
 부속서 5: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JPN/21_0718_05_e.pdf

1) 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수입금지 식물의 개정안 중 검역병해충 5종(지중해과실파리(*Ceratitis capitata*), 동양과실파리(*Bactrocera dorsalis species complex*), *Bactrocera cucurbitae*, 감자시스트 선충(*Globodera rostochiensis*),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에 대한 기주식물 및 국가/지역
 2) 식물보호법 시행령 별표2-2에 따른 수출국 내 수행되어야 할 특정 식물검역 조치 대상 식물의 개정안 및 관련 세부 규정

03 [일본]

○———— 일본 자국 내 토마토 바이러스(*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 ————○ 유입 방지에 관한 긴급조치 (G/SPS/N/JPN/828, '21.2.4.)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일본 자국 내 토마토 바이러스(*Tomato brown rugose fruit virus, ToBRFV*)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통보하였습니다.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NPPO)은 토마토 및 고추 종자와 식물¹⁾을 일본에 수출할 경우 다음 사항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1. 종자

- 1) 모본 식물에서 임의로 채취한 샘플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식물 샘플에 대하여 수확기 중 RT-PCR 검사 등 유전자 분석 결과 토마토 바이러스(ToBRFV)가 미검출되었음; 또는
- 2) 수출 전 RT-PCR 검사 등 유전자 분석 결과, 종자에서 토마토 바이러스(ToBRFV)가 미검출되었음; 종자 샘플은 국제종자검정협회(ISTA) 절차에 따라 종자가 46,000개 이상인 경우 임의로 종자 4,600개를 채취하고, 종자가 46,000개 미만인 경우 전체 종자의 10%를 검사하여야 함

2. 살아있는 식물 또는 재식용 식물(종자 및 과실 제외)

- 1) 로트(lot)별 임의로 채취한 식물 및 의심 증상이 있는 식물 샘플을 생장 중 또는 수출 전 RT-PCR 검사와 같은 적절한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결과 토마토 바이러스(ToBRFV)가 미검출되었음

3. 부기사항 기재(G/SPS/N/JPN/712 참고)

- 식물방역법 시행령(농림수산성령 제73/1950호) 별표 2-2의 제36항을 충족함

이번 긴급조치는 '21.3.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관련 품목: 토마토 종자 및 식물(*Lycopersicon esculentum* (= *Solanum lycopersicum*), *S. arcanum*, *S. cheesmaniae*, *S. chilense*, *S. galapagense*, *S. peruvianum*, *S. pimpinellifolium*) 및 고추(*Capsicum annuum*)

관련 사이트

<http://spsims.wto.org/en/EmergencyNotifications/View/170043?FromAllNotifications=True>

호주 농림수자원환경부는 토마토 종자 관련 페피노모자이크바이러스(*Pepino mosaic virus*) 및 포스피바이로이드속(*Pospiviroids*)에 대한 병해충 위험분석을 완료하였음을 통보하였습니다. 5종의 검역병해충에 관한 것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병해충 위험분석 대상 검역병해충(5종)

- *Pepino mosaic virus*(PepMV), *Columnea latent viroid*(CLVd), *Pepper chat fruit viroid*(PCFVd), *Tomato apical stunt viroid*(TASVd), *Tomato chlorotic dwarf viroid*(TCDVd)

2. 병해충 위험관리 조치

1) 요건 1: PCR 검사

- 5종 검역병해충 모두 대상
- 20,000개의 종자 및 종자 로트의 20%를 샘플로 사용하여 5종 검역병해충이 미검출됨을 확인

2) 요건 2: ELISA 검사

- *Pepino mosaic virus*(PepMV) 대상
- 20,000개의 종자 및 종자 로트의 20%를 샘플로 사용하여 PepMV가 미검출됨을 확인

3) 요건 3: 열처리

- *Pepino mosaic virus*(PepMV) 대상
- 80°C에서 72시간 처리

관련 사이트

<https://www.agriculture.gov.au/biosecurity/risk-analysis/plant/pepino-mosaic-virus-pospiviroids-tomato-seed>

WTO SPS 통보문

식품안전

01 [브라질]

농약 6종의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G/SPS/N/BRA/1741/Add.1 외 5건, '21.2.11. 외 5건)

브라질 위생감시국(ANVISA)은 「농약, 가정용 세정제품 및 목제 방부제」에 활용되는 활성성분 중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델타메트린(Deltamethrin)에 대한 잔류허용기준(MRL)을 제·개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제·개정된 MRL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보다 완화 ■ 국내기준 없음

문서번호	주요 제·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BRA/1741/Add.1	Flupyradifurone ■ 콩 0.4ppm(국내 완두 3.0ppm)	-	-	23/07/2020
G/SPS/N/BRA/1832/Add.1	Chlorothalonil ■ 브로콜리 0.5ppm(국내 3.0ppm), 케일 0.5ppm(국내 5.0ppm), 배추 0.5ppm(국내 2.0ppm) ■ 고구마 0.2ppm(국내 0.1ppm), 비트(부리) 0.2ppm(국내 0.05ppm), 마 0.2ppm(국내 0.1ppm), 생강 0.2ppm(국내 0.05ppm), 무 0.2ppm(국내 0.05ppm)	-	-	11/02/2021
G/SPS/N/BRA/1887	Saflufenacil ■ 수수 0.01ppm(국내 0.03ppm), 보리 0.01ppm(국내 0.03ppm)	-	03/04/2021	추후결정
G/SPS/N/BRA/1889	Flupyradifurone ■ 커피 1.5ppm, 멜론 1.0ppm, 오이 0.6ppm ■ 고추 0.6ppm(국내 1.5ppm), 토마토 0.5ppm(국내 2.0ppm)	토마토 종자	03/04/2021	추후결정
G/SPS/N/BRA/1893	Glyphosate ■ 견과류 0.1ppm(국내 1.0ppm), 강낭콩 0.05ppm(국내 3.0ppm), 수수 1.0ppm(국내 30ppm), 보리 0.05ppm(국내 20ppm)	-	03/04/2021	추후결정
G/SPS/N/BRA/1898	Deltamethrin ■ 수수 1.0ppm, 쌀 1.0ppm ■ 옥수수 1.0ppm(국내 1.5ppm), 밀 1.0ppm(국내 2.0ppm) ■ 콩 0.2ppm(국내 대두 0.1ppm)	조제식료품 기타 (쌀가루의 것)	03/04/2021	추후결정

관련 사이트

<https://pesquisa.in.gov.br/imprensa/jsp/visualiza/index.jsp?data=01/02/2021&jornal=515&pagina=126>
<https://pesquisa.in.gov.br/imprensa/jsp/visualiza/index.jsp?data=17/02/2021&jornal=515&pagina=142>
<http://antigo.anvisa.gov.br/documents/10181/5577176/CONSULTA+P%C3%9ABLICA+N+998+GGTOX.pdf/68d46d3b-f230-4418-86c0-0ea1b47b87a0>
<http://antigo.anvisa.gov.br/documents/10181/5577176/CONSULTA+P%C3%9ABLICA+N+998+GGTOX.pdf/68d46d3b-f230-4418-86c0-0ea1b47b87a0>
<http://antigo.anvisa.gov.br/documents/10181/6224103/%281%29CONSULTA+PUBLICA+N+1004+GGTOX.pdf/8be67b24-b8c6-422a-9fa3-a34b3e91f511>
<http://antigo.anvisa.gov.br/documents/10181/6224212/CONSULTA+P%C3%9ABLICA+N+1009+GGTOX.pdf/f90ef0af-4c36-4296-b075-479add7b0d8b>

02 [유럽연합]

농약 10종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G/SPS/N/EU/394/Add.1, '21.2.1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보건식품안전총국은 4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등 10종의 잔류허용기준(MRL)을 개정하여 통보하였습니다.

개정된 MRL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 기준과 동일 ■ 국내기준 없음

주요 개정 사항		주요(적용) 수출품	효력발생일 (일/월/년)
Carbon tetrachloride	■ 곡물(옥수수, 쌀 등) 0.01ppm	-	02/09/2021
Chlorothalonil	■ 사과 0.01ppm(국내 2.0ppm), 배 0.01ppm(국내 2.0ppm), 딸기 0.01ppm(국내 1.0ppm)	사과, 배, 딸기	
	■ 돼지 0.01ppm		
Chlorpropham	■ 양파 0.01ppm(국내 0.5ppm)	양파	
	■ 돼지 0.05ppm		
Dimethoate	■ 장미 0.05ppm	-	
Ethoprophos	■ 딸기 0.01ppm(국내 0.02ppm), 고구마 0.01ppm(국내 0.03ppm), 마늘 0.01ppm(국내 0.02ppm)	딸기, 고구마, 마늘, 아몬드, 꿀	
	■ 아몬드 0.01ppm, 꿀 0.05ppm		
Fenamidone	■ 양파 0.01ppm(국내 0.1ppm)	양파	
Methiocarb	■ 사과 0.03ppm, 배 0.03ppm	사과, 배	
Omethoate	■ 귀리 0.01ppm	-	
	■ 당근 0.01ppm		
Propiconazole	■ 사과 0.01ppm(국내 1.0ppm), 돼지 0.01ppm(국내 0.05ppm)	사과, 커피	
	■ 커피콩 0.05ppm		
Pymetrozine	■ 딸기 0.02ppm(국내 0.5ppm)	딸기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SPS/EEC/21_1086_00_e.pdf

03 [캐나다]

농약 3종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G/SPS/N/CAN/1371 외 2건, '21.2.11. 외 2건)

캐나다 보건부 해충관리규제청(PMRA)은 여러 종류의 농산물 내부 또는 표면의 농약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프로피코나졸(Propiconazole) 및 디메토에이트(Dimethoate)의 잔류허용기준(MRL) 제정을 알려왔습니다.

제정된 MRL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 삭제 ■ 국내기준보다 강화 ■ 국내기준 없음

문서번호	주요 제정 사항	주요(적용)수출품	의견제출 마감일 (일/월/년)	효력발생일 (일/월/년)
G/SPS/N/CAN/1371	Flupyradifurone ■ 상추 9.0ppm(국내 15ppm), 감자 0.01ppm(국내 0.05ppm), 근대 0.01ppm(국내 15ppm), 엽경채류 0.01ppm(국내 1.0ppm), 셀러리 0.01ppm(국내 9.0ppm), 아스파라거스 0.01ppm(국내 2.0ppm)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등	25/04/2021	추후결정
G/SPS/N/CAN/1374	Propiconazole ■ 밀 0.01ppm(국내 0.05ppm)	밀가루 등	27/04/2021	
G/SPS/N/CAN/1375	Dimethoate ■ 사과(국내 1.0ppm), 양배추(국내 2.0ppm), 양상추(국내 2.0ppm), 시금치(국내 1.0ppm) ■ 상추 2.0ppm	양배추(신선, 냉장), 사과주스(기타) 등	27/04/2021	

관련 사이트

<https://www.canada.ca/en/health-canada/services/consumer-product-safety/pesticides-pest-management/public/consultations.html>

01 [일본]

유기농 축산물(Organic livestock) 규격 개정

(G/TBT/N/JPN/671/Add.1, '21.2.12.)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유기농 칠면조의 생산 규격을 제정하기 위해 유기농 축산물 규격(농림수산성 고시 제1608호, '05년)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존 유기농 가금류(닭, 메추라기, 타조, 오리, 야생오리) 정의에 칠면조 추가
2. 유기농 칠면조의 평균 사료 섭취량
 - 8주 미만: 106g
 - 8주 이상: 318g
3. 마리 당 최소 실내 사육장 면적
 - 육용(meat type) 가금류(칠면조 제외, 생후 28일 이상만 해당): 0.1m²
 - 산란용(laying hens) 가금류(칠면조 제외, 생후 28일 이상만 해당): 0.15m²
 - 칠면조(생후 8주 이상만 해당): 0.3m²
4. 마리 당 최소 실외 사육장 면적
 - 육용(meat type) 가금류(칠면조 및 타조 제외, 생후 28일 이상만 해당): 0.1m²
 - 산란용(laying hens) 가금류(칠면조 및 타조 제외, 생후 28일 이상만 해당): 0.15m²
 - 칠면조(생후 8주 이상만 해당): 0.3m²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attachments/2021/TBT/JPN/final_measure/21_0892_00_e.pdf

01 [중국]

대두의 국가표준(안) 공표
(G/TBT/N/CHN/1529, '21.2.8.)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는 대두의 국가표준(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분류 기준

- 황대두: '대두 껍질이 황색이나 연한 황색을 띠며 대두 자체가 황갈색/연한 갈색/짙은 갈색을 지닌 대두'의 함량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청대두: '대두 껍질이 녹색인 대두'의 함량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흑대두: '대두 껍질이 검은색인 대두의 함량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기타 대두: '대두 껍질이 갈색, 다갈색, 적색 등 단일색상 또는 여러 색이 혼합된 대두'의 함량이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 혼합 대두: "황대두, 청대두, 흑대두, 기타 대두"에 속하지 않는 대두

□ 표시방법

- 포장 상자 또는 첨부문서에 대두 제품의 "명칭, 유형, 원산지, 생산 연도"를 명시
- 사전포장된 대두의 경우, 사전포장 식품에 대한 국가표준(GB) 규정을 준수
- 포장·저장·운송 정보는 'GB/T 191(포장·저장·운송에 대한 도형표시)'를 준수
- GMO 대두는 GMO 관련 규정에 따라 표시

□ 포장·저장·운송

- 포장: 포장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견고하여야 하며, 파손되지 않고 개봉되어 구멍이 보이지 않아야 함. 또한, 제품이 흩어지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포장으로 인해 제품을 오염시키거나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함. GMO 대두의 경우, 단독 포장하여야 함
- 저장: 청결·건조·방수·방습·방충·방서(防鼠) 및 이상한 냄새가 없는 창고 안에 저장하여야 하며, 유독성·유해성 물질 또는 수분 함량이 비교적 높은 물질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않아야 함
- 운송: 위생요건에 부합하는 도구·용기를 통해 운송하고, 운송 과정 중에 방수·방습 및 오염방지를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함

관련 사이트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1/TBT/CHN/21_0972_00_x.pdf

01 [유럽연합]

수입 유기농 제품 인증기관의 연례보고서 제출 등에 관한 규칙 제정

(G/TBT/N/EU/780, '21.2.18.)

유럽연합은 집행위원회 위임규정(안)을 통하여 수입 유기농 제품에 관한 감독기관(제3국 및 규제당국/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연례보고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1> 감독기관별 연례보고서 필수정보

구분	필수정보
제3국	(a) 제3국 내 유기농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정보 (생산 제품, 재배 지역, 생산 지역, 생산업체 수, 식품 가공활동 등) (b) EU로 수출되는 유기농산물 및 식료품에 관한 정보 (c) 제3국 관할당국이 이전에 수행한 감독 및 관리 활동 (d) 제3국에서 적용되는 생산 기준에 대한 변동사항 (e) 제3국에서 적용되는 규제조치에 대한 변동사항 및 관련 통제조치의 확인과 관련된 사항 (f) 제3국 기술 문서(technical dossier)에 관한 기타 변동사항 (g) 해당 인증서 및 관련 제품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연락처(contact point), 정보관리체계 대상인 운영업체의 최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기타 연락처 (h) 제3국과 관련된 기타 정보
규제당국/기관	(a) 제3국 규제당국/기관의 담당업무 개요 (b) 제3국에서 적용되는 생산 기준에 대한 변동사항 (c) 제3국에서 적용되는 규제조치에 대한 변동사항 (d) 제3국 규제당국/기관이 이전에 수행한 감독 및 관리 활동 (e) 승인 신청서에 첨부된 기술 문서 내 변동사항 (f) 승인기관이나 관할당국이 발표한 최신 평가보고서 사본 (g) 해당 인증서 및 관련 제품군에 대한 정보(인증 유보 및 철회된 사업자와 제품 포함)를 제공하는 대표 연락처(contact point), 정보 관리체계 대상인 운영업체의 목록(EU 공식 언어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웹사이트 (h) 규제당국/기관과 관련된 기타 정보

<표2> 감독기관별 승인 철회조건

구분	필수정보
제3국	(a) 제3국이 연례보고서(표1 참조)를 제시기간(매년 3.31일)에 제출하지 않음 (b) 연례보고서 내 정보가 불완전함 (c)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기간(30일 이상) 내에, 제3국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술 문서나 관리체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리지 않음 (d)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제3국이 현지 점검에 동의하지 않음
규제당국/기관	(a) 규제당국/기관이 연례보고서(표1 참조)를 제시기간(매년 2.28일)에 제출하지 않음 (b) 연례보고서 내 정보가 불완전함 (c) 집행위원회의 요청에 대응하여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집행위원회가 지정한 기간(30일 이상) 내에, 규제당국/기관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술 문서나 관리체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알리지 않음 (d) 규제당국/기관이 불이행 조사 결과를 제공하지 않음 (e) 규제당국/기관이 조사된 불이행 및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함 (f) 규제당국/기관이 집행위원회가 요청한 현지 점검에 동의하지 않거나, 규제조치의 시스템상 오작동으로 인하여 현지 점검 결과가 좋지 못함 (g) 소비자가 규제당국/기관이 승인한 제품의 속성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위험이 있음

이번 규칙은 제3국에는 '26.12.31일까지, 규제당국/기관에는 '24.12.31일까지 이행기간을 적용하였습니다.

의견제출 마감일은 '21.4.19일이며, 효력 발생일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21.2월 WTO SPS 통보 통계

'21. 2월말 기준, WTO SPS 통보 총 155건을 국가, 주요내용,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별로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검역(40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러시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유럽 일부(루마니아, 체코, 스웨덴)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1월 27일)	루마니아, 체코 (남부 보헤미아 주), 스웨덴 (칼마르 주)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 RUS/206
2	러시아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인도, 쿠웨이트, 세네갈산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2일)	인도, 쿠웨이트, 세네갈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 RUS/207
3	러시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루마니아, 체코 일부 지역산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8일)	루마니아, 체코 (남부 및 중앙 보헤미아 주) 스웨덴(칼마르 주)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 RUS/206/ Add.1
4	러시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루마니아, 체코 일부 지역산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8일)	루마니아, 체코 (남부 및 중앙 보헤미아 주) 스웨덴(칼마르 주)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 RUS/206/ Corr.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5	러시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불가리아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8일)	불가리아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RUS/208
6	러시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홍콩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10일)	중국, 홍콩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RUS/209
7	러시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핀란드산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12일)	핀란드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RUS/211
8	러시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스웨덴 일부 지역산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25일)	루마니아, 체코(남부 보헤미아 주), 스웨덴(칼마르 주), 스웨덴(베스트라 예탈란드 주)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RUS/206/ Add.2
9	러시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에스토니아산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25일)	에스토니아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RUS/213
10	브라질	등록면제 식용 및 비식용 수출축산물에 대한 수입절차지침	모든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BRA/1879
11	사우디아라비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폴란드 일부 지역산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22일)	폴란드(마조비에츠키에 주, 바르민스코 마주르스키 주, 로드츠키에시, 비엘코폴스키에 주)	살아있는 가금류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G/SPS/N/SAU/447/ Add.1
12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스웨덴 일부 지역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1월 29일)	스웨덴(스코네 주, 칼마르 주)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229
13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Emilia-Romagna)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1월 29일)	이탈리아(에밀리아 로마냐 주)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230
14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슬로바키아 트르나바(Trnava)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1월 29일)	슬로바키아(트르나바 주)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231
15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체코 보헤미아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1월 31일)	체코(남부 보헤미아 주)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232
16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쿠웨이트 알자라(Al Jahra)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1월 25일)	쿠웨이트(알자라 주)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233
17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영국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1월 25일)	영국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225/ Add.2
18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폴란드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8일)	폴란드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221/ Add.1
19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불가리아 플레벤(Pleven)산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14일)	불가리아(플레벤)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234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20	아랍에미리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핀란드산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2월 14일)	핀란드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ARE/235
21	우크라이나	동물복지 및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	모든교역국	동축산물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UKR/154
22	칠레	수화물로 반입되는 반려동물용 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의견수렴일 연장(3월 29일까지)	모든교역국	사료	동물위생;	G/SPS/N/CHL/664/Add.1
23	칠레	통보문 조치의 철회 공고-아프리카돼지열병(ASF) 청정국산 돈육의 수입지침	모든교역국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CHL/660/Add.2
24	카자흐스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독일 일부 지역산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1월 9일)	독일(올덴부르크시, 아우리히나쾰른주, 클로펜부르크, 작센주, 라이프치히)	가금 및 가금제품	식품안전;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KAZ/78
25	캐나다	어류전염성 질병에 관한 감수성 어류 목록 개정	모든교역국	수생동물 (어류)	동물위생;	G/SPS/N/CAN/1366
26	콜롬비아	수출용 소 및 버팔로 육류 작업장의 위생요건 제정	모든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동물위생;	G/SPS/N/COL/323
27	콜롬비아	반려동물 및 판매용 개, 고양이의 수출입 위생요건 개정	모든교역국	동물 (개, 고양이)	동물위생;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COL/281/Add.2
28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대만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 연장(90일)	대만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371
29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중국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 연장(90일)	중국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372
30	태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폴란드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 연장(90일)	폴란드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THA/373
31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폴란드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연장 90일)	폴란드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THA/374
32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대한민국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연장 90일)	대한민국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THA/375
33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베트남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연장 90일)	베트남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THA/376
34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인도네시아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연장 90일)	인도네시아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THA/377
35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필리핀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연장90일)	필리핀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THA/378
36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미얀마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연장 90일)	미얀마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THA/379
37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리아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의 잠정 수입 금지 조치(연장 90일)	불가리아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THA/380
38	태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한 중국산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연장 90일)	중국	살아있는 돼지 및 돈육제품	동물위생;	G/SPS/N/THA/38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39	필리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헝가리 일부 지역산 가금육 및 기타 제품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1월 29일)	헝가리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PHL/490
40	필리핀	체코산 가금류 및 가금제품의 긴급수입 금지 조치(2월 15일)	체코공화국	살아있는 가금 및 가금제품	동물위생;	G/SPS/N/PHL/491

식물검역 (28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뉴질랜드	식물검역조치(방사선 처리)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공고(4월 26일까지)	호주	식물 및 식물성산물	식물보호;	G/SPS/N/NZL/644
2	뉴질랜드	이스라엘산 파종용 토마토 및 고추종자의 수입재개 (ToBRFV 미검출 증명조건 추가)	이스라엘	식물 (종자)	식물보호;	G/SPS/N/NZL/642/Add.1
3	대만	토마토 바이러스(ToBRFV) 감염지역산 기주식물 또는 식물성 산물에 대한 신규검역요건 개정	중국, 키프로스, 체코, 프랑스,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요르단, 멕시코, 네덜란드, 팔레스타인, 스페인, 터키, 영국, 미국	식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 보호;	G/SPS/N/TPKM/560
4	대만	가지속 및 고추속 식물 종자의 수입을 위한 긴급식물위생조치 제언	모든교역국	식물 (고추속 및 가지속)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 보호;	G/SPS/N/TPKM/561
5	러시아	네덜란드산 재수출용 토마토의 잠정 수입금지 조치	네덜란드	식물 (토마토)	식물보호;	G/SPS/N/RUS/212
6	스위스	식물검역제품 신규물질 추가	모든교역국	식물검역대상	식품안전;	G/SPS/N/CHE/82/Add.3
7	에콰도르	식물검역요건(안) 제정 - 파종용 대마종자(<i>Cannabis sativa</i>)	미국	식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 보호;	G/SPS/N/ECU/251
8	에콰도르	식물검역요건(안) 제정 - 이스라엘산 체외배양용(in vitro) 오소니갈룸속 식물 (<i>Ornithogalum dubium</i>)	이스라엘	식물	식물보호;	G/SPS/N/ECU/252
9	영국	포도피어슨병균(<i>Xylella fastidiosa</i>) 유입방지 조치 - 해당 병해충 청정국산 기주식물만 수입을 허가함	모든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산물	식물보호;	G/SPS/N/GBR/5
10	온두라스	목재포장재의 규정 제정(4월 10일 발효)	모든교역국	식물 (목재)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 보호;	G/SPS/N/HND/11/Add.1
11	인도	사과 및 블루베리의 수입검역요건 조치 완화 - 묘목의 수입허가	영국, 조지아	식물 (사과, 블루베리)	식물보호;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토 보호;	G/SPS/N/IND/262
12	일본	식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식물검역대상 고시 및 규정 개정(검역병해충 목록, 수입금지 식물목록 등)	모든교역국	식물	식물보호;	G/SPS/N/JPN/827
13	일본	토마토 바이러스(ToBRFV)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	모든교역국	식물	식물보호;	G/SPS/N/JPN/828
14	칠레	미국산 핵과류 식물의 수입규정 제정 (복숭아, 자두, 살구, 벚나무 등)	미국	식물	식물보호;	G/SPS/N/CHL/649/Add.1
15	칠레	멕시코 일부 지역산 아보카도의 수입검역요건 개정	멕시코	식물 (아보카도)	식물보호;	G/SPS/N/CHL/667
16	카자흐스탄	자국 내 토마토 바이러스(ToBRFV) 유입방지를 위한 수입금지 조치	아제르바이잔	식물 (토마토)	식물보호; 동식물 해충/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KAZ/79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7	코스타리카	미국 텍사스산 파종용 쇠비름과 식물의 수입검역요건 발효 공고(4월 18일)	미국	식물 (쇠비름)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도 보호;	G/SPS/N/ CRI/235/Add.1
18	키르기스 공화국	유라시아 회원국 간 이동 시, 식물검역 증명서 미제출 품목의 확대(비검역병해충)	모든교역국	식물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도 보호;	G/SPS/N/ KGZ/17
19	키르기스 공화국	고위험 식물병해충 목록에 버섯종균(Spawn)을 추가함	모든교역국	식물 (버섯 종균)	식물보호; 해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영도 보호;	G/SPS/N/ KGZ/18
20	페루	대만산 패션프루트 과실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대만	식물 (패션프루트)	식물보호;	G/SPS/N/ PER/868/Add.1
21	페루	뉴질랜드산 키위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뉴질랜드	식물 (키위)	식물보호;	G/SPS/N/ PER/881/Add.1
22	페루	스페인산 <i>Transeius montdorensis</i> 수입검역요건 제정	스페인	식물	식물보호;	G/SPS/N/ PER/911
23	페루	우즈베키스탄산 신선 석류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우즈베키스탄	식물 (석류)	식물보호;	G/SPS/N/ PER/912
24	페루	병해충(<i>Phytoseiulus persimilis</i>) 위험분석 완료 공고	스페인	식물	식물보호;	G/SPS/N/ PER/913
25	호주	병해충 곡식수시령이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시행(해상 컨테이너 검역조치)	모든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보호;	G/SPS/N/ AUS/502/Add.6
26	호주	신규 식물검역증명서 시행예정 공고 (증명서 서명인 변경 등)	모든교역국	농축산물	식품안전; 동물위생; 식물보호;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해충 유래 여타 해로부터의 지역 보호;	G/SPS/N/ AUS/515
27	호주	토마토 종자관련 검역병해충 5종의 위험분석 완료 공고	모든교역국	식물 및 식물성 산물	식물 보호;	G/SPS/N/ AUS/455/Add.1
28	호주	농산물 수출검역증명서 서식개정(내용 수정)	모든교역국	식물	식품안전; 동물위생; 식물보호;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보호; 해충 유래 여타 위해로부터의 지역보호;	G/SPS/N/ AUS/515/Corr.1

식품안전 (87건)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1	대만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 쿠마포스(Coumaphos), 가미쓰로마이신 (Gamithromycin), 국내 미등록 농약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 TPKM/563
2	대만	CCC 식품품목의 사용규정 발효(2월1일) - 특정검사 준수요건에 관한	모든교역국	식품 및 식품용기	식품안전;	G/SPS/N/ TPKM/554/ Add.1
3	대만	식품의 사용기준 및 요건 제정 - 과유사 잎(Ilex guayusa)	모든교역국	식품 및 식품용기	식품안전;	G/SPS/N/ TPKM/552/ Add.1
4	대만	영아용 조제분유 내 글리시딜 지방산에스테르(glycidyl fatty acid esters)의 기준 제정	모든교역국	식품 (조제분유)	식품안전	G/SPS/N/ TPKM/555/ Add.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5	대만	식품첨가물의 규격 제정 (식품가공 시, 이산화탄소 활용가능)	모든교역국	식품 첨가물	식품안전;	G/SPS/N/ TPKM/535/ Add.1
6	대만	식품첨가물(살리실산)의 CCC코드 설정	모든교역국	식품 첨가물	식품안전;	G/SPS/N/ TPKM/562
7	러시아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RUS/210
8	몰도바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질산염(Nitrate), 노지재배/하우스 재배별 MRL기준 갱신(상추, 시금치)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동식물 해충/ 질병으로부터 사람 보호;	G/SPS/N/ MDA/19
9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스트렙토마이신(Streptomycin), 국내보다 완하(감귤류) *한국 수출품목: 감귤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23
10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티아디닐(Tiadinil), 국내기준 없음(사탕무)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24
11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벤조빈디플루피르(Benzovindiflupyr), 국내기준 없음(사탕무, 인삼) *한국 수출품목: 사탕무당, 인삼류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25
12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 티아디닐(Tiadinil), 국내기준 없음(포도, 아몬드 등 너트류) *한국 수출품목: 아몬드, (신선)포도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26
13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에마멕틴 벤조에이트(Emamectin Benzoate), 국내기준 없음(건조 차) *한국 수출품목: 차, 마태 등 조제품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27
14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플룩사메타마이드 (Fluxametamide), 국내기준 없음(건조 차) *한국 수출품목: 차, 마태 등 조제품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28
15	미국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클로피랄리드(Copralid), 국내기준 없음(양파, 밀, 라즈베리) *한국 수출품목: (신선)양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SA/3229
16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피리미포스-메틸(pirimiphos-methyl), 국내기준 동일(수수) *한국수출품목: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710/ Add.1
17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플루피라디퓨론 (flupyradifurone), 국내기준보다 강화(완두) *한국수출품목: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741/ Add.1
18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이미다클로프리드(imidacloprid), 국내기준보다 강화(토마토) *한국 수출품목: (신선)토마토, 토마토종자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790/ Add.1
19	브라질	생물농약의 사용허가 -이리응애과(Phytoseiidae, Neoseiulus idaeus)병해충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51/ Add.1
20	브라질	식품용 추출물 및 가공용액 목록 제정	모든교역국	식품 (추출물 및 용액)	식품안전;	G/SPS/N/ BRA/1684/ Add.1
21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농약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국내기준보다 강화(브로콜리, 케일)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32/ Add.1
22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농약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국내기준없음(목화, 땅콩, 쌀)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40/ Add.1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23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DODECENILA(국내 미등록 농약)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48/ Add.1
24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Thien carbazole methyl, 국내기준 없음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49/ Add.1
25	브라질	이리응애과 진드기(Neoseiulus barkeri)를 활용한 생물농약의 사용허가공고	모든교역국	식물 (병해충)	식품안전;	G/SPS/N/ BRA/1850/ Add.1
26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테트라데칸올(Tetradecanol), 국내기준 없음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60/ Add.1
27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오데카트리엔(Dodecatriene), 국내미등록 농약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61/ Add.1
28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코퍼하이드록사이드(copper hydroxide), 국내 잔류기준 면제농약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64/ Add.1
29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플루아지포프(Fluazifop), 국내 미등록 농약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0
30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카펜트라존에틸 입상수화제(carfentrazone-ethyl), 휴약기간 변경(30일에서 7일)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1
31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베타사이플루트린 유제(beta-cyfluthrin), 국내기준 없음(토마토, 감귤),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2
32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프로페노포스(profenofos), 국내기준 없음(콩)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3
33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플루트리아폴(flutriafol), 국내기준 없음(양파)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4
34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사이목시아닐(cymoxanil), 국내기준 없음(콩)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5
35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프로티오코나졸(protioconazole), 국내기준 없음(콩)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6
36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국내보다 강화(수수, 보리)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7
37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제타사이퍼메트린(zeta-cypermethrin), 국내기준없음(고구마, 비트, 당근 등)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8
38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국내보다 강화(고추, 토마토) *한국 수출품목: 토마토 종자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89
39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아브시스산(Abscisic acid), 국내기준 없음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0
40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프로파퀴자포프(Propaquizafop), 1일 섭취허용량(ADI) 0.015 ppm 제정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1
41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아세타미프리드(Acetamiprid), 급성독성참조량(ARfD) 0.025 ppm 제정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2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42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국내보다 강화(견과류, 강낭콩 등)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3
43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메트리부짐(Metribuzim), 국내 미등록 농약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4
44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에스-메톨라클로르(S-Metolaclo), 국내 미등록 농약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5
45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스피네토람(Spinetoram), 국내 기준 없음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6
46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메톡시페노자이드(Methoxyfenozide), 국내기준 없음(사탕수수)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7
47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델타메트린(Deltamethrin), 국내보다 강화(옥수수, 밀) *한국 수출품목: 조제식료품(기타)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8
48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트리플루랄린(Trifluralin), 국내보다 완화(두류)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899
49	브라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테부코나졸(Tebuconazole), 국내기준 없음(코코넛)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BRA/1900
50	엘살바도르	커피종자의 판매, 가공 및 생산요건 제정	모든교역국	식품 (커피)	식품안전: 식물보호:	G/SPS/N/ SLV/136
51	우크라이나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개정 (coccidiostats 및 histomonostats)	모든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 UKR/155
52	우크라이나	천연 광천수 및 샘물의 유통 및 생산요건 제정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UKR/156
53	우크라이나	포도 및 포도주의 생산, 제조요건 제정	모든교역국	식품 (포도주)	식품안전:	G/SPS/N/ UKR/157
54	우크라이나	식품 내의 트랜스지방 함량 규제 절차 제정	모든교역국	식품 (지방)	식품안전:	G/SPS/N/ UKR/158
55	유럽연합	식품첨가물인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의 기준 삭제	모든교역국	식품 첨가물	식품안전:	G/SPS/N/ EU/388/Add.1
56	유럽연합	일부 영유아용 식품 내 아크릴아미드(acrylamide)의 최대수준 관련 규안안 철회	모든교역국	식품 첨가물	식품안전:	G/SPS/N/ EU/405/Add.1
57	유럽연합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클로로탈로닐(chlorothalonil), 클로프로팜 (chlorpropham) 등 총 10종 *한국 수출품목: (신선)사과, 배, 딸기 등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EU/394/Add.1
58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이마자피르(Imazapyr), 국내기준동일(보리) *한국 수출품목: 쌀보리(기타)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774/ Add.1
59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톨피라레이트(Tolpyralate), 국내기준 동일(옥수수)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775/ Add.1
60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옥솔린산(Oxolinic Acid), 국내보다 강화(무, 양상추 등) *한국 수출품목: 복숭아(신선)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776/ Add.1
61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사이플루메토펜(Cyflumetofen), 국내기준없음(강낭콩) *한국 수출품목: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29
62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티엔카바존메틸(thiencarbazone-methyl), 국내기준 없음(사탕무)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30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63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티아디닐(Tiadinil), 국내보다 강화(쌀) *한국 수출품목 : 쌀가루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31
64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디클로로이오시아누릭산(Dichloroisocyanuric acid), 국내기준 없음(닭 지방)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32
65	일본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젠티안바이올렛(Gentian violet), 국내기준 없음 *한국 수출품목 : 육류조제품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JPN/833
66	칠레	Codex기준에 따른 모든 농약의 최대잔류허용수준(MRL) 개정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HL/567/ Add.1
67	칠레	농산물 수출작업장의 준수요건 제정 (유통업자, 작업장, 생산지요건 등)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HL/666
68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트리플루디모кса진(Trifludimoxazin), 국내기준없음(두과작물등) *한국수출품목: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50/ Add.1
69	캐나다	우유 및 유제품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원료함량, 살균처리 등)	모든교역국	식품	동물위생:	G/SPS/N/ CAN/1367
70	캐나다	체다치즈 제조용 식용색소(카라멜)의 안전성 평가 완료 공고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68
71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테트라코나졸(Tetraconazole), 국내보다 완화(수박, 오이) *한국 수출품목: (건조)호박, 오이류(식초)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51/ Add.1
72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carfentrazone-ethyl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55/ Add.1
73	캐나다	제빵용 식품효모(xylanase from <i>Aspergillus acidus</i> RF739)의 안전성 평가 완료 공고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69
74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정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국내보다 완화(비트, 당근 등) *한국 수출품목 : 냉동채소(당근, 마늘 등)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70
75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플루피라디퓨론(flupyradifurone), 국내보다 강화(감 자, 상추 등) *한국 수출품목 : 감자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71
76	캐나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 완료 공고 - 바실러스프렉서스 (<i>Bacillusflexus</i> AE-BAF)에서 유래한β-아밀라아제	모든교역국	식품 첨가물	식품안전:	G/SPS/N/ CAN/1372
77	캐나다	식품첨가물의 안전성평가 완료 공고 - 스피루리나(<i>Spirulina</i>) 추출물	모든교역국	식품 첨가물	식품안전:	G/SPS/N/ CAN/1373
78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의견수렴 공고 - 티아디닐(Tiadinil), 국내보다 강화(쌀) *한국 수출품목 : 쌀가루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74
79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 티아디닐(Tiadinil), 국내보다 강화(쌀) *한국 수출품목 : 쌀가루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75
80	캐나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채택 - 티아벤다졸(Thiabendazole), 국내기준 동일(망고) *한국 수출품목 : 없음	모든교역국	식품	식품안전:	G/SPS/N/ CAN/1376
81	콜롬비아	비소(Arsenic)를 함유한 사료 및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수입금지 조치	모든교역국	축산물	동물위생:	G/SPS/N/ COL/324
82	콜롬비아	음용수 및 얼음의 수입위생요건 제정	모든교역국	식품(물)	식품안전:	G/SPS/N/ COL/325
83	키르기즈 공화국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제정	모든교역국	축산물	식품안전:	G/SPS/N/ KGZ/19

번호	통보국가	논의내용	해당국가	해당품목	목적 및 사유	문서번호
84	태국	식품에 사용되는 미생물의 규격 및 분석법 채택	모든교역국	식품 미생물	식품안전;	G/SPS/N/ THA/262/ Add.1
85	태국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발효	모든교역국	식품 첨가물	식품안전;	G/SPS/N/ THA/276/ Add.1
86	호주	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 최대허용기준 개정	모든교역국	농축산물	식품안전;	G/SPS/N/ AUS/513
87	호주	식품 및 동물용 의약품의 최대허용기준 개정 - 포메사펜(Fomesafen), 브로목시닐(Bromoxynil), 플루오피람(fluopyram) 등, 국내보다 완화(상추) *한국 수출품목: 상추(결구상추 외, 기타)	모든교역국	농축산물	식품안전;	G/SPS/N/ AUS/514

* 통보문 원문 및 번역본 관련 상세내용은 SPS정보관리시스템(www.koreasps.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1.2월 국가별 주요 동식물검역조치

동물검역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러시아	루마니아, 체코 (남부 보헤미아 주), 스웨덴(칼마르 주)		27/01/2021
	루마니아, 체코 (남부 보헤미아 주), 스웨덴(칼마르 주)		08/02/2021
	루마니아, 체코 (남부 보헤미아 주), 스웨덴(칼마르 주), 베스트라예달란드 주)	살아있는 가금류, 가금류 제품 및 종란의 잠정수입금지	25/02/2021
	불가리아		08/02/2021
	에스토니아		25/02/2021
	인도, 쿠웨이트, 세네갈		02/02/2021
	핀란드		12/02/2021
	홍콩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및 이를 함유한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10/02/2021
몰도바	모든 교역국	살아있는 가금류, 가금류 제품 및 종란의 잠정수입금지	18/10/2020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마조비에 초키에 주, 바르민스코마주르스키주, 로드즈키에 시, 비엘코 폴스키에 주)	가금육, 난제품 및 관련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22/02/2021	
아랍에미리트	불가리아(플레벤)	사육 조류 및 야생 조류와 부산물(무처리)의 잠정수입금지	14/02/2021	
	스웨덴 (스코네 주, 칼마르 주)		29/01/2021	
	슬로바키아 (트라나바 주)		29/01/2021	
	영국		23/12/2020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주)		29/01/2021	
	체코 (남부 보헤미아 주)		31/01/2021	
	쿠웨이트(알자라 주)		25/01/2021	
	폴란드 핀란드		30/11/2020 14/02/2021	
카자흐스탄	독일(올덴부르크시, 아우리히, 니더작센 주, 클로펜부르크, 작센주, 라이프치히)	살아있는 가금류, 가금류 제품 및 종란의 잠정수입금지	09/01/2021	
태국	대만	살아있는 가금류 및 지육의 잠정수입금지	23/01/2021	
	중국		23/01/2021	
	폴란드		23/01/2021	
	대한민국		23/01/2021	
	미얀마		23/01/2021	
	베트남		23/01/2021	
	불가리아		살아있는 사육 돼지, 야생 멧돼지 및 지육의 잠정수입금지	23/01/2021
	인도네시아			23/01/2021
	중국			21/01/2021
	폴란드			23/01/2021
필리핀	23/01/2021			
필리핀	체코공화국	사육 조류, 야생 조류, 가금육 및 관련 제품의 잠정수입금지	15/02/2021	
	헝가리		29/01/2021	

식물검역

통보국가	해당국가	조치내용	적용일 (일/월/년)
뉴질랜드	이스라엘	파종용 토마토 및 고추 종자 수입 재개	18/02/2021
대만	모든 교역국	가지속 및 고추속 종자의 병해충 긴급조치	23/02/2021
러시아	네덜란드	신선 토마토의 잠정수입금지	17/02/2021
에콰도르	이스라엘	오소니갈룸속 식물(<i>Ornithogalum dubium</i>)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23/12/2020
온두라스	모든 교역국	목재 포장재 규정 개정	추후결정
일본	모든 교역국	토마토 바이러스 유입 방지 관련 긴급조치	추후결정
	멕시코	신선 아보카도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추후결정
칠레	미국	핵과류 식물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01/04/2021
	아제르바이잔	토마토의 잠정수입금지	16/01/2021
페루	뉴질랜드	키위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12/11/2020
	대만	패션프루트의 수입검역요건 제정	09/11/2020
호주	모든 교역국	곡식수시령이의 긴급조치	추후결정
	모든 교역국	토마토 종자 관련 병해충 최종 위험분석	추후결정